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 미구성

기 관 명 충청남도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수립,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이하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1)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지역 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다음2)과 같이 구성·운영하도록

1)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2.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2) 1.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는 관할구역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관리기관, 국방관련기관, 지역산림조합 및 민간단체의 장과 지역주민, 연접·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림

되어 있다

또한 산림청(○○○○○○○○과-0000, 2016. 0. 0.)호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자체에서는 재선충병 발생상황 및 공동방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관내 보령시 ○○면 ○○리에서 아래 [표]와 같이 2012. 2. 24.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257본이 최초 발생되어 2017. 7월까지 태안군 등 총 9개 시·군에서 469본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임에도, 2017. 11. 15. 감사일 현재까지도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표] 연도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구 분	계(본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본수)	726	257	141	154	81	34	59
보령시	547	257	141	82	24	21	22
태안군	89	-	-	72	17	-	-
서천군	8	-	-	-	5	-	3
천안시	36	-	-	-	27	5	4
논산시	14	-	-	-	8	-	6
금산군	8	-	-	-	-	8	-
부여군	8	-	-	-	-	-	8
홍성군	5	-	-	-	-	-	5
청양군	11	-	-	-	-	-	11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리소장 등으로 구성, 2.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의 구성원은 재선충병 발생과 방제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예찰 및 협업방제 등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함, 3.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